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신청요건 중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 인정액 기준이 삭제되는 등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부정 지급된 양육비 선지급금 반환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 및 관련 자료 협조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600호, 2026. 4. 28. 개정, 10. 29. 시행)됨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생·변경·상실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의 범위 및 내용을 규정하고, 이를 위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양육비 선지급 신청요건의 완화에 맞춰 정비하며, 부정 지급된 양육비 선지급금 반환을 위한 강제징수 시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도 운영시 일부 미비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위원 확대 및 부패방지장치 마련(안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신설)

1)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에 ‘경

찰청'을 추가함

2)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에 대한 연임 제한, 이해충돌방지 등 부패방지장치 마련

나.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생 등 확인을 위한 조사 범위 등(안 제17조의10, 별표2)

1) 조사의 범위에서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양육비 채권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가함

2) 조사의 내용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또는 횟수'를 '양육비 채무 이행금액'으로 변경하고, '선지급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구성'을 '신청인과 미성년 자녀의 동거 여부, 미동거 사유 등 실질적 양육에 관한 사항'으로 보완하여 규정하며, '선지급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삭제함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양육비 선지급금을 강제징수 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신설함(별표3)

다. 선지급 신청인의 금융정보 및 소득·재산요건 확인을 위한 조문 삭제(안제17조의11, 제18조, 제19조제21호)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국세청”을 “국세청, 경찰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다”를 “하며, 1차례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3조의3(위원회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3조의2제1항(앞의 제척사유를 인용하는 조항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조의2

제17조의10제1항제1호 중 “불이행”을 “이행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발생을”을 “발생 및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양육비 채권자 해당 여부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채무 불이행”을 “채무자가 이행한 양육비 금액 및 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를 “신청인과 미성년 자녀의 동거 여부, 미동거 사유 등 실질적 양육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법 제21조의11제4항에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을 “법 제21조의11제5항에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출입국·병무·교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21조의11제6항에서 “주민등록전산정보, 국세·지방세, 토지·건물,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출입국·병무·교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란 별표 3에 따른 전산망 또는 자료를 말한다. 이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제17조의11을 삭제한다.

제18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9조제21호를 삭제한다.

제21조 중 “별표 3과”를 “별표 4와”로 한다.

별표 1 제4호가목 중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를 “외국국적동포”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중 “가족관계증명서”를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표 제5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병무·보
훈급여·교정”을 “병무·교정”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7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카목 및 타목을 각각 삭제한
다.

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국
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자료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양육비 선지급 부정수급액 강제징수를 위한 조사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제17조의10제7항 관련)

1.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 국세·지방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
 - 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해당 사업자의 휴업 및 폐업 정보를 포함한다)에 관한 자료
 - 나.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관한 자료
 - 다. 「지방세법」 제4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토지·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차량·어업권·양식업권·회원권의 시가표준액
3. 토지·건물 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
 - 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
 - 나.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 및 지적전산자료
 - 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에 관한 자료
 - 마. 「농지법」에 따른 농지대장
 - 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분양대상자에 관한 자료
 - 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정보에 관한 자료
 - 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에 관한 자료
 - 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거래에 관한 자료
 - 차.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카. 「선박등기법」에 따른 선박등기사항증명서
 - 타. 「선박법」에 따른 선박원부
 - 파.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 하. 「주택법」에 따른 분양권에 관한 자료

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상
황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부 중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
너.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등록원부

4.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월평
균보수 또는 월보수액에 관한 자료(다만,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4항에 따
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제공한 자료 또는 정보는 제외한다)

나.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관한 자료 및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 등 지급에 관한 자료(다만, 「고용보험법」 제
77조의7제4항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제공한 자료 또는 정보는 제외
한다)

다.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
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가입자 및 급
여에 관한 자료

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 등의 소득·재산자료 및 가입자의 가입자
격 종류·사업장 정보 등 가입자격 관련 자료

마. 「국민연금법」에 따른 소득월액, 가입자, 자격정보, 연금 및 일시금 급여액 등
국민연금원부에 관한 자료

5. 출입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거소신고에 관한 자료

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자료 및 국민·외국인의 출입국 자료

6. 병무·교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 자료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 입소자 및 퇴소자에 관한 자료

7. 그 밖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제공 및 환수 등에 관한 자료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정보

- 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농지연금에 관한 자료
- 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에 관한 자료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원회의 위원 등) ① 법 제 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u>국세청</u>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위원 등) ① ----- ----- ----- ----- ----- <u>국세청, 경찰청</u> ----- ----- ----- -----.
② 법 제6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u>한다</u> .	② ----- ----- ----- <u>하며, 1차례 연임할 수 있다.</u>
<u><신 설></u>	<u>제3조의2(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u> <u>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u>

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신 설>

제17조의10(선지급 신청인 조사의 범위 등) ① 이행관리원의 장이 법 제21조의11제1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는 자(이하 “선지급 신청인”이라 한다)

제3조의3(위원회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3조의2제1항(앞의 제척사유를 인용하는 조항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7조의10(선지급 신청인 조사의 범위 등) ① -----

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그 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1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21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관한 사항

3. (생략)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이행관리원의 장이 선지급 신청인에 대한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생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실시한다.

1. 양육비 채무자, 양육비 채무 금액,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또는 횟수 등 양육비 채무에 관한 사항

2. 선지급 신청인이 속한 가구

--.

1. -----
----- 이행금액-----

<삭제>

3. (현행과 같음)

4. -----

----- 발생 및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양육비 채권자 해당 여부를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채무 금액, 채무자가 이행한 양육비 금액 및 그 -----

2. 신청인과 미성년 자녀의 동

의 구성

3. 선지급 신청인이 속한 가구 의 소득과 재산

4. (생략)

④ · ⑤ (생략)

⑥ 법 제21조의11제4항에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란 별표 2에 따른 전산망 또는 자료를 말한다.

<신 설>

거 여부, 미동거 사유 등 실질적 양육에 관한 사항

<삭 제>

4.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21조의11제5항-----

----- 출입국 · 병무 · 교정

⑦ 법 제21조의11제6항에서 “주민등록전산정보, 국세·지방세, 토지·건물,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출입국·병무·교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란 별표 3에 따른 전산망 또는 자료를 말한다. 이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

제17조의11(선지급 신청인 등의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1조의
12제2항에 따라 선지급 대상자
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하는 경우
에는 선지급 대상자의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변경 또는 상실
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
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하여야 한
다.

② 이행관리원의 장이 법 제21
조의12제1항·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7
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에 따라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선지급 신청인과 그 가구원 또
는 선지급 대상자의 금융정보등
을 요청하거나 금융기관등의 장
이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금융정보등의 범위
및 해당 금융정보등을 요청하거
나 제공할 때 명확히 해야 할
사항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2

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조
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삭 제>

조제1항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각각 “이행관리원의 장”으로,
“양육비 채무자”는 각각 “선지
급 신청인 및 그 가구원, 선지급
대상자”로 본다.

제18조(업무의 위탁) ① ~ ③ (생략)

④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4
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
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
다.

1. 법 제21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 확인에 관
한 업무

2. 법 제21조의11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및 그 요청
에 따라 해당 자료를 제출받
는 업무

3. 법 제21조의12에 따른 금융
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그 요
청에 따라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18조(업무의 위탁)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제공받는 업무

⑤ · ⑥ (생략)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성
평등가족부장관 및 이행관리원
의 장(제18조에 따라 해당 업무
가 위탁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
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
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
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
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
리할 수 있다.

1. ~ 20. (생략)

21. 법 제21조의12에 따른 선지

급 신청인 등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사무

22. · 23. (생략)

제21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28조
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_____.

1. ~ 20. (현행과 같음)

<삭 제>

22. · 23. (현행과 같음)

제21조(과태료 부과기준) -----

별표 4와 --.

< 의안 소관 부서명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연 락 처	(02) 2100 - 6343